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17. 12. 13.

사회건설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출일자 : 2017년 11월 13일

나. 제출자 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 : 2017년 11월 17일

라. 상정일자 : 제205회 영등포구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
제5차 사회건설위원회(2017. 12. 5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생활환경국장 서만원)

가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
- 통합관리기금 폐지에 따른 조문 정비
- 상위법 개정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: 권대광)

-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상 2017.12.31.자로 만료되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통합관리기금의 운영 폐지 및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문 일부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.

- 주요 개정 내용은
 - 안 제2조의2제3항에서 기금운용계획 정책사업의 지출금액 변경과 관련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제2항에 근거하여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비율을 “10분의 5이하” 를 “10분의 2이하” 로 상위법에 맞게 조정하였으며,
 - 안 제2조의3에서 기금의 존속기한 만료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“2017년 12월 31일” 에서 “2022년 12월 31일” 로 연장하였고,
 - 안 제3조제4항은 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” 이 폐지됨에 따라 그와 관련하여 조항을 삭제하였으며,
 - 안 제3조의2제4항에서 위촉된 위원 임기는 “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” 를 “2년으로 한다” 로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 따라 정비하였음.

- 본 개정 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 만료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, 상위법 개정사항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현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,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306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 : 2017. 11.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영등포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이 연장된 사항을 반영하고,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우리 구 소속 환경미화원 자녀들에게 학자금 지원을 위해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기금을 내실 있게 운용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구 의회의 의결 없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범위의 축소
(안 제2조의2)
- 나.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(안 제2조의3)
- 다.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 폐지에 따른 기금 여유자금의 통합관리
기금 예탁 조항 삭제(안 제3조)
- 라. 「지방회계법」 제정에 따른 회계 관계 공무원의 책임 규정 정비(안 제4조)
- 마.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

3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규 : 「지방자치법」,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다. 협의사항

- 1) 규제심사 : 신설·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
 - 2) 부패영향평가 · 성별영향분석평가 · 인권영향평가 : 원안동의
- 라. 기타사항
- 1) 입법예고(2017.9.28. ~ 10.18. / 20일간) 결과 : 의견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2제3항 단서 중 “5”를 “2”로 한다.

제2조의3 전단 중 “2017년 12월 31일”을 “2022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제3조제3항 중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.

제3조의2제2항 중 “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”을 “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하되 연임할 수 있다”를 “한다”로 한다.

제4조제3항 중 “「지방재정법」 제94조의 규정을”을 “「지방회계법」 제49조를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의2(기금의 운용계획) ①、② (생략)</p> <p>③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인 정책사업의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 다만, 주요 항목 지출 금액의 10분의 5 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	<p>제2조의2(기금의 운용계획) ①、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
<p>제2조의3(기금의 존속기한) 기금의 존속기한은 <u>2017년 12월 31일</u>까지로 한다.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</p>	<p>제2조의3(기금의 존속기한) ----- ----- <u>2022년 12월 31일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
<p>제3조(기금운용·관리) ①、② (생략)</p> <p>③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<u>의하여</u> 운용하여야 한다.</p> <p>④기금의 여유자금을 <u>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에</u> 예탁할 수 있다.</p>	<p>제3조(기금운용·관리) ①、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----- <u>따라</u>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삭제></u></p>
<p>제3조의2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 (생략)</p> <p>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</p>	<p>제3조의2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-----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--</p>

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
구성하되,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
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
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
한다.

③ (생략)

④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
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
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
수 있다.

⑤ (생략)

제4조(기금회계직공무원) ①、②
(생략)

③기금운용관 및 기금 출납원의 책
임에 대하여는 「지방재정법」 제9
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④-----

----- 한다.

⑤ (현행과 같음)

제4조(기금회계직공무원) ①、②
(현행과 같음)

③-----
----- 「지방회계법」 제49조를 -
-----.